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15호
----------	-------------

제출연월일 2007. 2. 28.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6. 6. 29. 개정된 통합방위법시행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의거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제처 법령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인용법명 낫표(「 」)표시 (안 제1조)
- 나.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수정(안 제3조제5항)
- 다.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 수정(안 제5조제1항)
- 라. 통합방위지원본부 반편성 수정(안 제6조제5항)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2007. 1. 4 ~ 1. 25) 결과 제출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중 “통합방위법”을 “「통합방위법」”으로 한다.

제3조중 제5항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항 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서장

7. 해양파출소장

제5조제1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항 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관리과장

제6조제5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총괄,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를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분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명: <u>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통합방위법</u>(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사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 ④ (생략)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u>각호</u>에 정한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4대대장 3. 교육장 4. 경찰서장 5. 국군기무부대 관계자 <u><신 설></u> <u><신 설></u> 6.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한 자</p> <p>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u>각호</u>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작전장교 2. 정보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u>정보장교, 경찰서 정보과장</u> 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동원장교 4.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5. 심리전담당간사 : 기획담당관 <u><신 설></u></p>	<p>제명: <u>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통합방위법</u>」 ----- ----- ----- ----- ----- -----</p> <p>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u>각 호</u>에 정한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4대대장 3. 교육장 4. 경찰서장 5. 국군기무부대 관계자 6. <u>소방서장</u> 7. <u>해양파출소장</u> 8. (현행과 같음)</p> <p>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u>각 호</u>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작전장교 2. <u><삭제></u> 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동원장교 4.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5. <u><삭제></u> 6. <u>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관리과장</u></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시장 소속 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p> <p>② ~ ④ <생략></p> <p>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u>기획담당관</u>이 되고,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u>총괄,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u>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p>	<p>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시장 소속 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기획감사담당관</u>----- ----- ----- -- <u>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u> <u>홍보분야</u>----- ----- --.</p>

관계법령 발취

□ 통합방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3.31, 2006.5.30>

1.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관계자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 ② <생략>
- ③ <생략>
- ④ <생략>
- ⑤ <생략>
- ⑥ <생략>

제1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30>